#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

(배지숙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82 발의년월일 : 2020. 12. 04.

발 의 의 원 : 배지숙, 김재우

김태원, 이시복 이영애, 강성환 김성태, 김지만 송영헌, 안경은 윤기배, 임태상 홍인표, 황순자 의원(이상 14명)

#### 1. 제안(제정)이유

- 가.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 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.
- 나. 감염병·화재·사고·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 역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긴급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긴급지원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
- 라.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- 마. 위기가구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10조)
- 바. 긴급지원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, 제 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#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계곤란, 재난·재해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·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위기상황"이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각 호의 사유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.
- 2. "긴급지원대상자"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「국민기초 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하의 가구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(이하 "대상자" 라 한다)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재해구호법」, 「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」, 「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」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대상자의 발굴·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
    - 가. 생계지원: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 지원
    - 나. 주거지원: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 및 현물 지원
    - 다.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: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
  - 2. 민간기관 ·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
    - 가. 사회복지기관・단체 및 민간구호기관・단체와의 연계 지원
    - 나. 상담 및 정보제공
 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6조(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) ① 시장은 대상자와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대상자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조사·확인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·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·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1.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
  - 2. 대상자 선정 심사
  - 3. 구청장 · 군수의 추천자에 대한 심사
  - 4. 민간구호기관 · 단체 등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
  - 5. 그 밖에 긴급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  - 1. 대구광역시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
    - 2.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
    - 3. 대구광역시 구·군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
    - 4. 협력 민간단체·시설의 임직원
    - 5.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분야 대학교수
    - 6.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- ④ 관계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  -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 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0조(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 또는 재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원절차 등)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·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 및 조사, 지원, 이의신청,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경비 등 지원) ①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·지원을 수행하는 기관· 단체 등에 대하여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관의 종사자와 생활업종 종사자 등에게 활동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·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·군 및 민간구호기관·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4조(사무의 위임 및 위탁) ① 시장은 대상자의 위기상황 조사·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긴급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## 관계법령

### [긴급복지지원법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위기상황"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. 〈개정 2010. 1. 18., 2012. 10. 22., 2014. 12. 30., 2018. 12. 11.〉
  - 1.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- 2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- 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- 4.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- 5.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 - 6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(副所得者)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- 7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- 8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9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 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, 지원 종류·내용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2. 30.〉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·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  - ③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·보호 또는 지원이 어</u>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·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·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제7조의2(위기상황의 발굴) ①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</u>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2. 30.]

### [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]

- 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가구(이하 이 조에서 "위기가구"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4. 7.〉
  - 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 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  - 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  -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

### 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12. 29., 2011. 3. 29., 2012. 2. 22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6. 1. 7., 2017. 1. 17., 2017. 7. 26., 2018. 9. 18., 2019. 3. 26., 2019. 12. 3.>
  - 1. <u>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</u>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  - 가. <u>자연재난</u>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다. 삭제〈2013. 8. 6.〉

2.~12. (생략)

[전문개정 2010. 6. 8.]